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- 136호

『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1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련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·보호하고 있으나,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,
- 나.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함.(안 제3조)
- 다.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함(안 제4조)
- 라.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·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마.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(수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-주 소 -성 명 -연락처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가족”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, 직계 존·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장애인가족지원센터”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(이하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
2.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
3.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
4.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
5.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
6.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자문기구)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·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·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)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권한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센터는 당해 군·구에서 운영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□ 장애인복지법 -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-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□ 건강가정기본법 -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□ 지방자치법 - 제104조(사무의 위임) 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- 제2조(정의) 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-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- 제6조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 □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- 제3조(기능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장애인복지법】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【건강가정기본법】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 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7>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】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2-04-29>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4. 자치구·군간의 균형분포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④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】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 및 의결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 계획과 중요사업·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·건의사항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
3.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
4. 기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